

의안번호	2211911
의 퇴 인	전용기의원
회 답 일	2025.8.21.
추계번호	25D4028

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조(목적)	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따른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	
2	안 제3조(적용범위)	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(訴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 ¹⁾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음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조(목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조(적용범위)	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(손해배상책임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2. 상세 사유

□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제기(안 제1조 및 제3조)
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대상(피고)이 될 수 있고, 배상금액 및 소송비용 지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다만,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 건수, 소송가액, 승소가능성, 배상금액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5년 예산 기준 법무부 ‘국가배상금 지급’ 사업에 1,317억 6,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그 세부내역은 ‘소송비용’ 7억원, ‘배상금’ 1,310억 6,500만원임

[표 1] 법무부 ‘국가배상금’ 세부사업 현황: 2020~2025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예산현액(A)	집행액(B)	집행률(A/B)	불용액(A-B)
2020	100,000	73,234	73.23%	26,766
2021	150,107	124,450	82.91%	25,657
2022	150,343	149,108	99.17%	1,235
2023	100,254	100,253	100%	1
2024	107,743	107,743	100%	—
2025	131,765	—	—	—

자료: 법무부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